소방안전관리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1999.3.1		16		
2	1999.12.1		17		
3	2006.7.1		18		
4	2018.10.22		19		
5	2020.11.30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소방안전관리 규정

<개정 2020.11.30>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칭한다)에서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0.11.30.>
- 제2조 (소방안전관리자의 권한) ① 사무처장을 소방안전관리책임자로 하고, 소방계획의 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.<개정 2020.11.30.>
 - ② 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한다.<개정 2018.10.22., 개정 2020.11.30.>
 - ③ 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건물 및 실별 소방안전담당 책임자를 지정한다. <개정 2020.11.30.>
- 제3조 (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)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<개정 2020.11.30.>

- 1. 소방계획의 작성
- 2.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, 신고, 피난 등의 훈련
- 3.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정비
- 4. 화기취급의 감독
- 5. 자위소방대 조직운영
- 6. 기타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<개정 2020.11.30.>
- 제4조 (공사담당자의 준수사항) 본 대학교 내에서 공사를 행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1.30.>
 - 1. 용접, 기타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는 한편 작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필요한 지시를 받을 것<개정 2020.11.30.>
 - 2.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.
 - 3.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, 모닥불 등의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
 - 4. 위험물류의 사용은 그 때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것 <개정 2020.11.30.>
 - 5. 소방안전관리는 작업책임자가 책임을 질 것<개정 2020.11.30.>
- 제5조 (소방안전관리자에의 연락)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 자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0.11.30.>
 - 1. 임시로 화기를 사용할 때
 - 2. 건축물 및 각종 설비기구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

제정일: 1985. 2. 6 - 1 - 개정일: 2020.11.30

- 제6조 (화기의 사용제한)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1.30.>
 - 1.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
 - 2. 흡연 금지 장소 혹은 흡연 장소의 지정

제 2 장 소방안전관리 조직 등

- 제7조 (소방안전관리 조직) ① 평소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건물별 소방안전담당 책임자 및 각실별로 화기 책임자를 둔다.<개정 2020.11.30.>
 - ② 소방용 설비, 피난설비, 기타 화기사용시설에 대해서 적정관리와 기능보유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밑에 아래와 같은 점검 검사반을 둔다. <개정 2020.11.30.>
 - 1. 건축물 등의 검사반 : 건물의 방화벽, 방화문, 배연설비 등의 방화구획의 위치, 구조 및 내장, 방염 등의 관리 및 검사의 임무 담당
 - 2. 화기사용시설 검사반 : 프로판 가스, 재난용 기구, 연료저장, 회적장, 흡연 장소 등의 화기사용개소의 관리 및 검사의 임무 담당
 - 3. 전기설비 검사반 : 전기배선, 전기기기 등의 예방관리 및 검사의 임무 담당
 - 4. 위험물 대량 가연물 검사반 :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및 검사의 임무 담당
 - 5. 소방안전 순찰반 : 소방안전 순찰에 관한 임무 담당<개정 2020.11.30.>
 - 6. 기계설비 검사반 : 기계설비 촉수의 과열방지, 펌프 등에 의한 화재위험의 제거 임무 담당
 - 7. 소화설비 검사반 : 소화설비 기구의 점검정비의 임무 담당
 - 8. 경보설비 정비반 : 경보설비 기구 등의 점검정비의 임무 담당
 - 9. 피난설비 점검 정비반 : 피난계단, 비상구, 기타 피난 시설기구의 점검 정비 등의 임무 담당
 - 10. 소방용수 등의 점검 정비반 : 소방용수 등의 기능 및 장애물 제거, 관리 및 검사의 임무 담당
- 제8조 (소방안전담당 책임자의 의무) 건물별 소방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1.30.>
 - 1. 해당 건물 화기책임자에 대한 업무의 지도 및 감독
 - 2.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협조<개정 2020.11.30.>
- 제9조 (화기책임자의 업무) 화기책임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1.30.>
 - 1. 실내 및 책임구역 내의 화기단속
 - 2. 화기사용 설비기구 등의 점검, 안전장치의 작동 확인 또는 소화 단, 각건 물의 담당요원은 각실을 수시로 순찰(전기, 수도, 난로, 휴지통 등을 점검) 하고 그 이상유무를 소방안전담당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1.30.>
- 제10조 (자체검사 및 정비계획) 자체검사는 화재위험도, 건축물의 구조,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7조 제2항과 같이 점검책임자를 지정, 연간 또는 월간 계획에 의거 점검

제정일: 1985. 2. 6 - 2 - 개정일: 2020.11.30

실시한다.

제11조 (소방용 기계기구의 점검정비) 소방용 기계기구의 점검정비는 다음에 의하여 실시한다.

1. 소방시설의 점검

거 기 차 무	설비구분	실 시	비고	
점검항목		시 기	횟 수	비 고
외관점검	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	6, 12월 " "	2회 이상 "	
기능시험	소화설비 경보설비	3, 9월 "	2회 이상 "	
청 소	소방설비기구	수	시	

2. 건축물 및 화기사용시설의 점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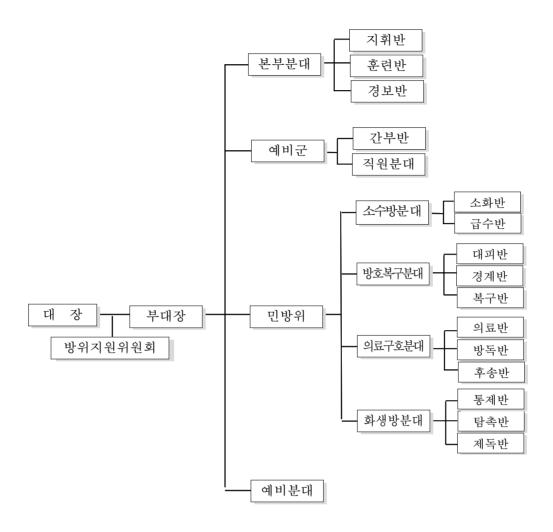
검사대상	검사횟수(월)	검사대상	검사횟수(월)
건축물	연 2회 (3, 9)	위험물시설관리	연 5회 (1,2,3,11,12)
화기사용설비	화기사용설비 연 7회 (1,2,3,5,8,11,12)		연 2회 (4,10)

제12조 (자체검사 및 검사에 대한 결과보고) 전조의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한 후 각 점검 검사반장은 그 결과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1.30.> 제13조 (불비결함의 정비) 소방안전관리자는 각종 점검 및 검사결과에 있어 결함 사항에 대하여서는 즉시 보수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1.30.>

제 3 장 자위 소방 활동

제14조 (직장 자위소방대 조직) 화재 발생 또는 기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총장을 대장으로 하는 자위소방대를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.<개정 2020.11.30.>

1. 자위소방대 편성표



2. 직장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가. 지휘반 : 총장, 사무처장 순으로 임무수행

나. 훈련반 :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년간소방계획 수립<개정 2020.11.30.>

다. 경보반 : 화재발생시 자체통보 및 소방서 신고, 관계기관 통보

라. 소화반 : 화재발생시 방수 및 소화기구 사용

마. 급수반 : 수리의 보존과 급수 운반 보급

바. 대피반 : 화재시 인명대피유도 및 주요서류 물건 등 반출이동

사. 경계반 : 비상경계 및 반출물건 경비 출입인원 통제

아. 복구반 : 소방시설 운영조작, 방화문 개폐, 기타문의 개방, 소방활동상

장애물 제거

자. 의료반 : 질식, 중경상자 응급조치

차. 방독반 : 민방위 임무수행

카, 후송반 : 사망자 안치 및 질식, 중경상자 지정병원으로 기급후송 가료조치

제15조 (야간 및 공휴일 활동체제) ① 야간 및 공휴일에 있어서는 다음 표와 같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한다.

야간 및 공휴일 직장소방대 편성표



- ②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초기 소화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신속히 관할 소방서에 화재의 발생을 통보하고 총장 및 소방안전책임자,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1.30.>
- ③ 당직자는 화재발견시부터 진화까지의 제반 경과사항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1.30.>

제 4 장 교육훈련

- 제16조 (교육훈련) 본 대학교의 전 교직원(용역업체근무자포함)에게는 다음과 같이 소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종합훈련(지휘, 소화, 신고, 피난, 유도 등) : 연 2회
 - 2. 부분훈련(소화설비, 피난설비, 비상연락, 구호활동 등) : 연 2회
 - 3. 기초훈련(소화활동)
 - 4. 도상훈련
- 제17조 (훈련실시 결과 통보)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(일시, 장소, 훈련종별, 참가인원, 기타 필요한 사항)를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한다. <개정 2020.11.30.>
 -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훈련을 실시한 후 소방안전일지 또는 업무일지에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1.30.>
- 제18조 (소방안전설비)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방안전, 소화, 피난경보 등의 설비를 최대한 확보 운영한 다.<개정 2020.11.30.>

제 5 장 상벌 및 변상

- 제19조 (상벌 및 변상)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와 소화활동에 공로가 있는 교직원의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1.30.>
 -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를 게을리 함

으로써 화재 등을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처벌 및 변상을 상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1.30.>

제 6 장 준 용

제20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•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<개정 2020.11.30.>

부 칙

- 1.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준한다.<개정 2020.11.30.>
- 2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- 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9월 11일부터 적용한다.
- 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정일: 1985. 2. 6 - 6 - 개정일: 2020.11.30